

# 충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운영지침

제정 2014. 12. 23.

개정 2017. 03. 31.

개정 2017. 06. 13.

개정 2018. 09. 18.

개정 2019. 12. 11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(이하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) 사업단은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산하에 두고, 소재지는 충남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내에 둔다.(개정 2017.6.13.)

제3조(사업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 강좌 및 창업 멘토링 운영
2. 대학 내 아이디어 발굴
3. 예비창업자 발굴
4. 창조적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
5. 기타 창업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업무

제4조(적용범위) 사업단 운영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5조(임원 및 직무) ①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및 부단장을 둔다.(개정 2017.3.31.)

②사업단장은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9.12.11.)

③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유관기관 및 협의회 등 대외협력업무
2. 창업인프라 확산 계획 추진

3.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④사업부단장은 대학 소속의 교직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17.3.31.)

⑤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17.3.31.)

제6조(운영인력) 사업단은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산학협력교원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점검
2.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
3.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위원회는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장 및 부단장과 창업지원단 행정지원부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, 10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며,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자율성을 위하여 위원장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장이 된다.(개정 2017.3.31.)

③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계) ①사업단운영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충남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, 국가재정법을 따른다.

②재정지원 기관이 별도의 회계처리규정을 제시할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.

제9조(보칙)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기관 및 대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3. 31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6. 13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9. 18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2. 11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